

# 난민 관련 통계 (2017. 12. 31. 기준)

## I. 난민 현황

### 1. 2017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646	688	785	599	619	702	812	739	859	842	1,284	1,367	9,942

### 2. 국적별 난민심사현황('94~'17.12.)

(단위 : 건)

구분 국적	총계	심사 중			종 료					
		계	1차	이의 신청	심사결정 완료				철회	
					소계	난민보호				
						난민	재정착	인도적	불인정	
총 계	32,733	9,557	7,209	2,348	19,438	706	86	1,474	17,172	3,738
파키스탄	4,268	804	450	354	2,919	56	0	29	2,834	545
중 국	3,639	1,119	768	351	1,945	8	0	34	1,903	575
이 집 트	3,244	629	407	222	2,348	15	0	4	2,329	267
나이지리아	1,831	431	356	75	1,296	4	0	6	1,286	104
카자흐스탄	1,810	1,152	819	333	471	3	0	0	468	187
방글라데시	1,455	413	346	67	917	104	0	3	810	125
시 리 아	1,326	68	49	19	1,153	4	0	1,120	29	105
기 타	15,160	4,941	4,014	927	8,389	512	86	278	7,513	1,830

### 3. 연도별 재신청자 현황

(단위 : 건)

2016년	2017년	계
301	991	1,292

### 4. 2017년 비자유형 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단계	C계열	B계열	E계열	G계열	기타	계
인원	3,999	3,994	574	540	835	9,942

5. 2017년 난민인정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재신청 현황

(단위 : 명)

단계	1차	2차	소송	재정착	계
인원	62	24	5	30	121

※ 재신청 중 난민인정 17건 포함

6. 2017년 인도적체류허가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재신청 현황

(단위 : 명)

단계	1차	2차	계
인원	290	28	318

※ 재신청 중 인도적체류허가 18건 포함

※ 318건 중 가족결합 인도적체류허가 50건

7. 2017년 불허, 취소, 철회자, 인도적체류지위자 현황

단계	불허	취소	철회	인도적체류자	계
인원	5,607	0	1,200	318	7,125

8. 2017년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국적	미얀마	에티오피아	예멘	이란	파키스탄	기타	계
인원	35	23	11	11	9	32	121

9. 2016, 2017년 월별 난민인정 현황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	1	8	3	4	1	5	2	1	5	10	39	19	98
2017	0	9	2	5	6	9	30	11	9	15	15	10	121

10. 2017년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단위 : 건)

사유	종교	정치	특정집단	인종	국적	내전	가족결합	기타	계
건수	2,927	1,565	1,101	778	32	179	267	3,093	9,942

11. 2017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현황

○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거점	사무소	연도	2017
서울	소계		<b>6,448</b>
	서울		4,146
	안산		33
	양주		1,208
	수원		526
	인천		93
	평택		122
	천안		51
	청주		55
	서산		18
	춘천		14
	대전		19
	당진		28
	남부		0
	동해		15
	고양		119
	속초		1
인천	소계		<b>2,227</b>
	인천		2,227
	안산		0
부산	소계		<b>326</b>
	부산		221
	울산		94
	창원		11
	김해		0
	사천		0
광주	소계		<b>409</b>
	광주		359
	전주		43
	목포		0
	군산		7

대구	소계	175
	대구	175
	구미	0
제주		312
여수		13
화성보호소		9
청주보호소		2
인천공항		21
총계		9,942

※ '17. 3. 13. 인천사무소를 거점사무소로 지정함에 따라 '17년 접수건은 3. 13. 기준으로 1. 1.~3. 12. 안산, 인천 접수건은 거점사무소 서울에 포함, 3. 13.~12. 31까지 안산, 인천 접수건은 거점사무소 인천에 포함

## 12. 사무소별 난민인정 현황

사무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화성보	계
인원	31	13	12	4	2	62

※ 1차 심사 인정 건 기준

## 13.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현황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	14	9	13	13	45	20	11	9	16	23	14	197

## 14.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 건)

	계	인천공항(회부)	제주(회부)	김해(회부)	동해(회부)
2016년	187(61)	168(57)	11(4)	7(0)	1(0)
2017년	197(21)	184(20)	11(1)	2(0)	0

15. 2017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단위 : 건)

국적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타이	파키스탄	기타	계
인원	10	7	4	4	4	2	2	2	35

16. 2017년 난민 아동 통계

○ 2017년 난민인정 121건 중 아동(0세-17세)에 대한 난민인정은 48건임

17. 연도별 불법체류자 중 난민신청 통계(난민신청 시기 기준)

(단위 : 건)

2016년	2017년	계
2,974	3,264	6,238

18. 2017년 65세 이상 난민 통계(인도적체류지위, 난민신청자, 인정자 포함하여 각각 통계)

(단위 : 건)

난민신청	난민인정	인도적체류허가
5	0	2

19. 2017년 여성 난민 통계(인도적체류지위, 난민신청자, 인정자 포함하여 각각 통계)

(단위 : 건)

난민신청	난민인정	인도적체류허가
2,117	69	112

## II. 난민 심사

### 1. 2017년 난민신청자 평균 1차 심사 결정 기간

○ 약 7개월

### 2. 2017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소집시기, 각 회의별 심사인원)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소집시기	2. 17.	4. 14.	6. 2.	7. 12.	9. 29.	12. 1.
심사건수	721	1,077	470	801	638	835

### 3. 2017년 예산 중 사무소별, 언어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계
인천공항	17,500	11,735	1,075	475	21,875	52,660
서울	63,115	122,350	2,1400	57,100	139,815	403,780
부산	1,050	6,100	6,525	675	10,100	24,450
인천	0	3,675	6,050	5,225	41,725	56,675
광주	5,139	5,300	3,214	562	12,351	26,566
대구	1,375	3,875	2,675	875	17,150	25,950
여수	698	0	0	205	757	1,660
제주	775	1,900	400	17,625	1,425	22,125
화성(보)	860	0	0	245	2,575	3,680
청주(보)	0	140	0	0	92	232
김해공항	650	0	0	0	0	650
법무부	0	75	0	0	1,560	1,635
(합계)	91,162	155,075	41,339	82,987	247,865	620,063

4. 2017년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사무소	지출액	비고
인천공항	19,200	
서울	31,200	
부산	2,400	
인천	6,200	
안산	1,000	
수원	2,400	
평택	2,400	
제주	2,400	
대구	2,400	
여수	2,400	
양주	3,400	
광주	2,400	
화성(보)	2,400	
청주(보)	4,8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3,400	
(합계)	98,400	

5. 2017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여수	화성 (보)	청주 (보)	계
건수	537	10	1	2	68	122	75	2	1	0	818

6. 2017년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17. 12월 말 기준)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화성(보)	청주(보)	계
인원	22	4	1	4	2	1	1	1	1	38

7. 2017년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교육진행 내역(내용, 횟수, 일수 등)

○ 법무부 난민과 주관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 실시

교육과정	횟수	일수	참석인원	내용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3회	각 2시간	44	면접 시 주의사항, 면접 기법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등 교육
난민담당자 인권 및 면접기법 등 교육	1회	5시간	64	인권감수성 및 면접기법 등 교육
출입국향 난민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	1회	3시간	12	출입국향 회부심사 개선 논의, 인권감수성 및 면접기법 등 교육
난민전담공무원 간담회	2회	각 3시간	35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 난민 실무사례집 발간 등 논의
난민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2일	63	난민심사 사례 공유, 난민인권 및 국제 난민동향 등 교육

○ 법무연수원에 교육과정 개설 운영 중

- 집합교육 과정으로 매년 1회(매회 20명)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운영
-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난민소송실무, △난민심사실무 및 심사기법, △난민 인정심사·처우·체류지침, △난민정책 및 난민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 Ⅲ. 처우

#### 1. 2017년 난민구료비 집행 내역(금액, 연인원)

(단위 : 천원)

구 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계
금액	18,881	177,572	196,453

#### 2. 2017년 난민의료비 집행 현황(사무소별, 목적별-건강검진, 개별 의료지원 등)

(단위 : 천 원)

구 분	서울	인천공항	계
건강검진비	4,836	0	4,836
의료비	806	1,514	2,320

#### 3. 연도별 생계비 총 신청자 수(국적별, 연령, 성별)

##### ○ 2017년 국적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국적	나이지리아	이집트	라이베리아	세네갈	우간다	기타	계
인원	151	82	44	44	44	420	785

##### ○ 2017년 연령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구분	0~4	5~14	15~18	19~64	65세 이상	계
인원	76	29	5	674	1	785

##### ○ 2017년 성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구분	남	여	계
인원	615	170	785

#### 4. 연도별 생계비 총 지원결정자 수(국적별, 연령, 성별)

##### ○ 2017년 국적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국적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카메룬	예멘	기타	계
인원	88	51	25	24	23	225	436

○ 2017년 연령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연령	0~4	5~14	15~18	19~64	65세 이상	계
인원	52	24	3	357	0	436

○ 2017년 성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성별	남	여	계
인원	335	101	436

5. 2017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 8억1천7백만 원

6. 2017년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생계비 지급 기간별 통계)

○ 평균지급 3개월

기간(개월)	1	2	3	4	5	6	7	8	계
인원	174	94	145	206	73	4	11	3	710*

\* '16년도 선정되어 '17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274명 포함

7. 2017년 지원된 생계비 중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의 생계비 지원금액, 지원자 수, 지원받은 연인원

○ 지원금액 : 80,395천 원/지원자 수 : 58명, 연인원 328명

8. 재정착난민 처우지원 내용 및 금액

○ 초기정착 지원

- 재정착난민에게는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입소기간동안의 단계별 한국어 집중교육, 취업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 심리상담, 멘토 지정 등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센터내 교육비 예산('17년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집행된 교육비 예산은 총 1억5천6백만원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정착 후

- 센터를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재정착난민에게는 인천사무소의 특별 사회통합위원을 통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1년간의 주택임차료를 지원

(‘17년도 주택임차료 지원금액 총 1억 3,100만원(보증금 8,000만원\*, 월 임차료 5,100만원))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회수 예정